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590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고 1. B

2. C

3. 주식회사 D

4. E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F 사이에 2019. 8. 19.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을 각 취소하고,나. 피고 B는 피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9. 8. 26. 접수 제131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은 소외 F(강원 횡성군 G)에게 2019.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1 건설기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F 사이에 2022. 4. 27.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2022. 4. 27.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D은 소외 F(강원 횡성군 G)에게 2022.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2 목록 기재 2 건설기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F 사이에 2022. 7. 28.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E에게 2022. 7. 28.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E은 소외 F(강원 횡성군 G)에게 2022.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2021차전23 약정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F에게 원금 37,314,0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나. F의 아들인 피고 B는 2019. 8. 26. 피고 C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22. 4. 27. 피고 주식회사 D 소유이던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1 기재 로더(이하 '이 사건 로더'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2. 7. 28. 피고 E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2 기재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게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진다. F은 피고 C, 주식회사 D,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로더 및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피고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쳤다.

F과 피고 B의 명의신탁약정은 F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매도인인 피고 C, 주식회사 D, E은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전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F의 아들로서 나이가 어려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로더 및 덤프트럭을 매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H에 대여된 이 사건 로더와 덤프트럭을 F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과 로더 및 덤프트럭의 실제 매수인은 F이고 피고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위 피고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의 아들인 피고 B가 2000년생으로 부동산과 건설기계 등을 소유하기에 비교적 어린 나이로 보이고, 원고가 H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H 직원이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건설기계를 F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을가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2019년경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 측에서는 원고 측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여직원을 통해 원고 측에

유리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시 피고 B의 할아버지인 I이 피고 C에게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는 할아버지 I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로더 및 덤프트럭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와 F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로더 및 덤프트럭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와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공민아

별지